

보도참고자료

| | |
|---------------|------------------------|
| 작성자 (전화번호) | 김준경 연구위원 (958-4044) |
|---------------|------------------------|

어음의 經濟的 機能과 制度 改革方案

98. 12. 12

韓 國 開 發 研 究 院

<要約>

현행 진성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시장규모 미비 등 경제내의 구조적 결함으로 제도가 誤用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構造改革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어음發行規模 및 어음割引 현황: 97년말 현재 기업의 어음發行規模(잔액 기준)는 97兆원으로 96년말(85조원) 대비 14%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규모는 47兆원으로서 96년(53조원) 대비 11% 감소.

○ 이에 따라 97년말 현재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어음발행규모)은 97년의 62.3%에서 크게 하락한 48.5%에 불과.

* 97년에 어음의 현금화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 발생을 전후하여 금융부실 및 기업의 부도위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급격히 위축된 데에 주로 기인.

○ 금년 상반기중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음발행 자체가 감소됨과 동시에 부도위험에 따른 信用梗塞으로 인해 어음할인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현금화율이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금년 11월 이후에는 지난 9월 1단계 금융 구조조정 완료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음.

현행 어음제도의 問題點: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不健全한 상거래질서, 信用去來體制 미정착, 경직적 金利體系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어음할인이 제약되는 문제 노정.

- 우리 나라의 경우 진성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부도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가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조장하고 어음거래의 **安全性**을 저해함으로써 건전한 어음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어음할인 **金利**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의 어음할인 **誘因**이 저해됨.

어음제도 改革方案: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의 **未定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어음제도의 **改革**은 다음과 같은 3대 **基本課題**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제고, 어음거래의 **公信力** 확보,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割引**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제고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 惠澤**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을 유도함으로써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제도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작성 및 유통 등 불건전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虛偽 稅金計算書** 발행기업에 대해 **刑事處罰**을 엄격히 집행.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의 식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간소화.

- 진성어음할인을 위해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國稅廳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세금계산서를 축적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어음거래의 公信力 확보

-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赤色去來處 지정기간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어음부도에 따른 penalty 확대.
- 현재 최종부도(2차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처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年 4회 이상의 1차부도 기준을 年 2회(혹은 3회) 이상의 1차부도로 축소하여 어음부도에 대한 市場規律을 강화.
- 기업간 신용거래질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어음과 같이 支給日을 기재하여 결제할 수 있는 支給期日 約定手票(post-dated check)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 지급기일 약정수표가 발행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거래과정에서 현재의 수표에 해당하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음.
 - * 지급기일 약정수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어음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거래수단을 다양화.

<지급기일 약정수표의 經濟的 기능>

지급기일 약정수표는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추가적인 危險이 수반되므로 수표발행 사업자는 자신의 經營 및 信用狀態에 대한 자신감을 市場에서 評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일반어음 발행자는 市場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도위험이 높은 사업자로 평가받게 되지만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위험부담은 피할 수 있음.

따라서 지급기일 약정수표제가 정착되어 기업간 신용거래 수단이 다양화될 경우 사업자의 信用狀態에 대한 보다 正確한 評價 및 이에 따른 割引金利의 差等適用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즉, 지급기일 약정수표의 경우 높은 公信用을 바탕으로 낮은 割引金利를 적용받는 반면, 일반어음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할인금리가 적용될 것임.
- 따라서 특히 大企業과 건전 중소기업은 자체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지급기일 약정수표로 거래할 誘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할인 촉진

-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 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할인유인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현 금융위기상황이 극복되는 시점에 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수단으로 운용되는 韓銀 總額限度貸出制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어음할인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財政에서 전담.

-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연쇄부도 및 이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信用梗塞** 해소가 필수적이므로 어음할인에 대한 **信用保證基金**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어음**保險制度**도 활성화.
 -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출연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優先順位**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신용보증부문에 집중 배정.
- 고의적인 어음부도 유인을 억제하고 어음부도에 따른 **善意**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활한 **債權回收**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 기업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의 **子會社** 형태로 **債權回收 專門會社**를 육성하여 신용정보와 채권회수 업무를 연계하여 채권관리부터 채권회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기업신용정보 **交換**시스템 구축 및 **信用評價會社**의 육성 등을 통하여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을 촉진.
 - * 세금채납 및 휴·폐업정보(국세청), 개인파산선고 등 경제판결(법원), 공공요금 채납정보(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統合管理**할 수 있는 종합적인 **信用情報網** 확충.
 - *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경쟁체제 구축.
- **財閥**의 진성어음 등 **優良**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資産擔保附 證券化** (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제도를 도입하고 **同** 증권을 국내 및 해외투자가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도모.

目 次

| | |
|--------------------------------|----|
| 1. 問題의 提起 | 1 |
| 2. 眞性어음의 經濟的 機能: 理論的 背景 | 2 |
| 가. 金融側面의 比較優位 | 3 |
| 나. 圓滑한 實物商去來 支援機能 | 4 |
| 3. 최근의 어음發行 및 어음割引 現況 | 6 |
| 가. 어음發生規模 現況 | 6 |
| 나. 金融機關의 어음割引 現況 | 10 |
| 4. 우리나라 어음制度의 構造的 問題點 | 14 |
| 가. 不健全한 商去來秩序 | 14 |
| 나. 信用去來體制의 未定着 | 14 |
| 다. 硬直的 金利體系로 인한 어음割引 制約 | 18 |
| 5. 어음制度의 改革方案 | 19 |
| 가.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提高 | 20 |
| 나. 어음去來의 公信力 確保 | 22 |
| 다.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割引 促進 | 25 |

1. 問題의 提起

외환위기 발생 이후 어음부도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어음제도가 기업의 連鎖不渡 및 만성적인 자금난을 초래하므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제도 자체를 廢止하자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어음발행자의 사기적 행각 등이 노출될 때마다 일부 논자와 중소기업자들은 어음제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결제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고,
- 이와 관련하여 2001년 8월부터 어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어음법 改正法律案이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임.

그러나 상거래 결제수단으로서 어음의 높은 活用度 및 경제적 기능을 감안할 때, 어음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실물거래의 심각한 위축과 금융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어음이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未詳이나, 로마시대부터 상인들 간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에도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어음은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결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企業間 信用(trade credit)으로서 경제주체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융통함과 동시에 실물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보유.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내의 구조적 결함으로 制度가 誤用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생적 결제수단인 어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構造改革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함.

2. 眞性어음의 經濟的 機能: 理論的 背景

眞성어음은 實物상거래와 關連하여 판매자의 物품공급과 구매자의 대금지급간의 時間的 不一致를 中개하는 企業間 信用(trade credit)인 동시에 企業의 중요한 단기자금 調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투명한 상거래 및 정상적인 금융관행하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에 의한 생산활동(원료구입과 제품판매)을 가능케 하여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中小企業에게는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임.
- 실제로 기업의 단기자금 調達源 중 어음발행(지급어음)을 통한 조달비중은 24%, 받을어음의 금융기관 割引을 통한 조달비중은 23%로서 어음을 이용한 자금조달비중은 총 47%로 추정되고 있음.

<表 1> 全産業 法人企業의 短期資金調達 중 어음발행·할인 비중

(단위: %)

| | 1995 | 1996 |
|-------------------------|-------|-------|
| 외상매입금 | 17.2 | 17.3 |
| 어음 | 40.7 | 46.7 |
| 지급어음 | 25.8 | 23.9 |
| 금융기관 어음할인 ¹⁾ | 14.9 | 22.8 |
| 금융기관 단기차입 ²⁾ | 34.7 | 29.9 |
| 기타 단기차입 | 7.4 | 6.0 |
| 합 계 | 100.0 | 100.0 |

註 : 1) 韓國信用情報의 법인기업의 금융기관 단기차입중 어음할인이 차지하는 비중(30% 내외)을 이용하여 추산.

2) 금융기관 어음할인 제외.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각년도, 韓國信用情報.

가. 金融側面의 比較優位

진성어음은 일상적인 實物去來의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에 비해 去來費用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 販賣者는 상품거래과정에서 購買者의 제반 경영정보를 일반 금융기관에 비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情報費用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음.

- * 판매자는 구매자의 買入規模 및 買入時點의 변화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비해 구매자의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評價가 가능.

- * 이와 함께 판매자는 상품거래과정에서 구매자의 사업현장을 자주 訪問하게 됨에 따라 信用調査費用 및 監視費用(monitoring cost) 측면에서도 비교우위가 있음.

- 진성어음은 지속적인 실물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간의 신용이므로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어음발행자(물품구매자)의 보다 誠實한 資金償還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판매자(특히 獨占的 지위에 있는 판매자)는 물품공급자 입장에서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거래관계를 中斷할 수 있다는 威脅(threat)을 가할 수 있어 구매자의 보다 성실한 자금상환을 유도할 수 있음.

- * 이러한 구매자의 성실한 자금상환유인은 製造 大企業體와 유통업체(백화점 등)간의 거래관계에서 존재.

- 또한 거래기업의 不渡가 발생한 경우에도 진성어음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한 경우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事後的인 자산처분 및 資金回收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 판매자(어음수취인)는 어음부도시 구매자(어음발행인)의 在庫 등 잔여자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 자체의 販賣網을 이용하여 취득한 구매자 자산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處分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債權回收 측면에서도 비교우위가 있음.

진성어음은 기업간 신용이지만 금융기관을 통한 割引 및 市場流通이 가능하므로 販賣者(어음소지자)의 流動性管理에 유리한 결제수단임.

○ 금융기관 입장에서라도 할인어음은 만기일에 어음발행인과 할인의뢰인의 거래은행간 어음교환과정을 통하여 自動決濟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流動性을 제고하는 데 기여.

* 또한 어음할인은 금융기관이 지급기일까지의 이자, 즉 割引料를 미리 공제하고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收益性 측면에서도 유리.

Adam Smith는 일찍이 「國富論(1776)」에서 不實貸出에 따른 신용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은 眞性어음만을 割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진성어음주의: Real Bills Doctrine).

○ 진성어음할인은 융통어음할인과는 달리 資金用途가 분명하여 금융자금의 轉用(fungibility)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음.

나. 圓滑한 實物商去來 支援機能

판매자의 販路가 특정구매자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 (즉 구매자가 獨占의 지위에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長期的인 去來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음결제를 수용할 인센티브가 존재.

○ 판매자는 단순히 現在의 賣出에 따른 이익 뿐만 아니라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한 未來賣出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현금결제에 비해 불리한 조건의 어음결제를 수용할 유인이 있음.

- 특히 大企業과 中小 協力業體간 그리고 大型 百貨店과 中小 納品業體간 에 이루어지는 어음거래는 대부분 이러한 유인체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진성어음을 통한 상거래에 있어서는 어음支給滿期 조정 등의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판매제품의 有效價格(effective price)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품의 需要를 擴大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價格差別(price discrimination) 관련 規制가 존재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 결제 대신 어음결제를 수용함으로써 판매제품의 有效價格 인하와 이에 따른 수요 확대를 도모할 유인이 있음.

* 판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조건의 어음결제를 수용함으로써 제품의 유효가격을 낮출 경우 기존 구매자에 대한 實質的인 가격인하 없이도 새로운 需要創出이 가능. 특히 잠재적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信用割當(credit rationing)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어음결제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이러한 어음지급조건 등의 조정을 통해 實質的인 가격인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間接的인 價格差別(indirect price discrimin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간접적인 가격차별은 판매자의 市場支配力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大企業의 유통업체(例: 백화점)에 대한 납품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公正去來法(제 23조)에 의거 價格差別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음.

3. 최근의 어음發行 및 어음割引 現況

가. 어음發生規模 現況

1997년말 현재 全産業의 기업체가 販賣代金으로 수취한 어음발생규모(잔액 기준)는 97兆원으로서 96년말(85兆원) 대비 14% 증가하여 89년 이후 急増趨勢가 지속됨 (표 2 참조).

- 어음발생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GDP에서 점하는 비중도 88년의 11.5%에서 97년에는 23.0%로 상승.
- 全産業의 기업체가 어음형태가 아닌 외상으로 수취한 외상매출금 발생규모는 97년말 현재 127兆원으로서 96년말(90조원) 대비 42% 증가하였음.

< 외상매출채권 發生規模 推定方法 >

외상매출채권 發生規模는 「企業經營分析」에서 집계된 각 연도말 전산업의 未現金化된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 잔액과 각 연도말 金融機關의 진성어음할인, 팩토링 및 외상채권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음.

1996년까지의 舊회계기준은 외상매출채권을 미현금화된 받을어음 및 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하였으나, 1997년부터 적용된 新회계기준은 어음과 외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하나로 통합하였음.

- 따라서 1997년도 미현금화된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 규모는 과거 1994~96년 기간중 「企業經營分析」의 미현금화된 총외상매출채권 중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점하는 비중의 年平均 수치를(30% 및 70%)를 이용하여 추산.

<表 2> 외상賣出債權의 發生規模 및 現金化 現況

(단위 : 年末 殘額, 10億원, %)

| | 1985 | 1990 | 1994 | 1995 | 1996 | 1997 |
|----------------------------|--------|--------|---------|---------|---------|---------|
| 받을어음(A) | 5,410 | 15,853 | 29,365 | 32,212 | 31,914 | 49,785 |
| 어음割引(B) | 4,192 | 11,859 | 34,290 | 38,826 | 52,746 | 46,836 |
| 預金銀行 | 2,672 | 7,725 | 18,285 | 21,637 | 24,372 | 24,262 |
| 投金·綜金社 ¹⁾ | 236 | 1,101 | 9,474 | 8,156 | 4,477 | 1,300 |
| 相互信用金庫 | 938 | 2,732 | 5,811 | 6,716 | 8,835 | 7,661 |
| 生命保險會社 | 346 | 15 | 208 | 218 | 321 | 477 |
|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 ²⁾ | - | 165 | 413 | 416 | 356 | 371 |
| 信用卡 | - | 121 | 99 | 123 | 169 | 162 |
| 리스회사 | - | - | - | - | 499 | 1,269 |
| 割賦金融會社 ³⁾ | - | - | - | - | 3,017 | 1,790 |
| 新技術金融會社 | - | - | - | - | - | 18 |
| 팩토링會社 ⁴⁾ | - | - | - | 1,560 | 10,700 | 9,526 |
| 어음發生規模(C=A+B) | 9,602 | 27,712 | 63,655 | 71,038 | 84,660 | 96,620 |
| 어음 現金化率(B/C) | 43.7 | 42.8 | 53.9 | 54.7 | 62.3 | 48.5 |
| 외상賣出金(D) | 14,023 | 27,549 | 62,285 | 72,430 | 85,301 | 116,164 |
| 외상債權貸出(E) | 177 | 341 | 275 | 225 | 4,256 | 11,330 |
| 預金銀行 | 177 | 341 | 275 | 225 | 80 | 62 |
| 割賦金融會社 ⁵⁾ | - | - | - | - | 4,176 | 11,268 |
| 외상賣出金發生規模(F=D+E) | 14,200 | 27,890 | 62,560 | 72,655 | 89,557 | 127,494 |
| 외상賣出金 現金化率(E/F) | 1.2 | 1.2 | 0.4 | 0.3 | 4.8 | 8.9 |
|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規模(G=B+E) | 4,369 | 12,200 | 34,565 | 39,051 | 57,002 | 58,166 |
| 總외상賣出債權 總發生規模(H=C+F) | 23,802 | 55,602 | 126,215 | 143,693 | 174,217 | 224,114 |
|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G/H) | 18.4 | 21.9 | 27.4 | 27.2 | 32.7 | 26.0 |

- 註: 1) 제3자어음할인 및 팩토링금융의 총계임.
 2) 공제사업기금의 제2호대출임.
 3) 팩토링금융만 포함.
 4) 商法에 의거 설립된 팩토링회사의 팩토링금융.
 5) 내구재, 기계류, 주택 등에 대한 할부금융만 포함.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調查統計月報」,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전국종합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0년대 말 이후 어음발행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높은 投資 증가세 및 經常收支 赤字 지속 등에 따른 기업부문의 資金不足 심화 및 財務構造 악화로 現金決濟能力이 低下된 데에 주로 기인.

-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판매대금의 現金決濟比重은 88년의 44%에서 96년에는 2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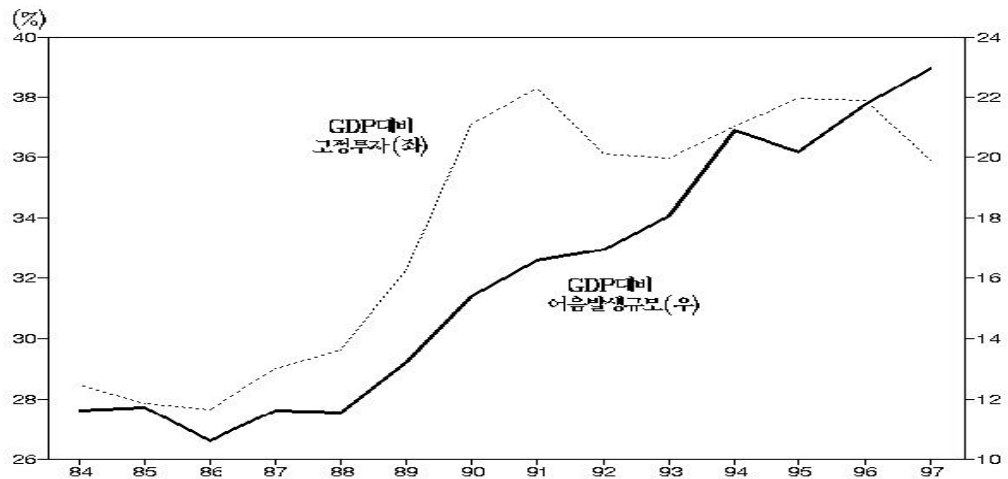
<表 3> 中小製造業體 販賣代金 決濟手段 構成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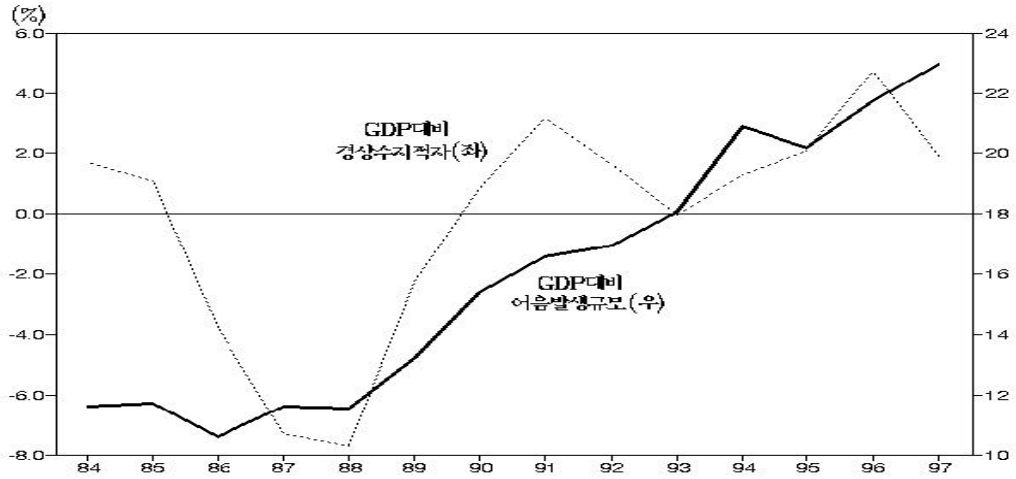
| | 現金 | 어음 | 외상 |
|------|------|------|------|
| 1988 | 43.6 | 45.6 | 10.8 |
| 1992 | 34.0 | 59.2 | 6.8 |
| 1993 | 29.4 | 56.2 | 14.4 |
| 1994 | 28.2 | 56.6 | 15.2 |
| 1995 | 30.3 | 57.5 | 12.2 |
| 1996 | 29.4 | 55.7 | 14.9 |

資料: 通商産業部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實態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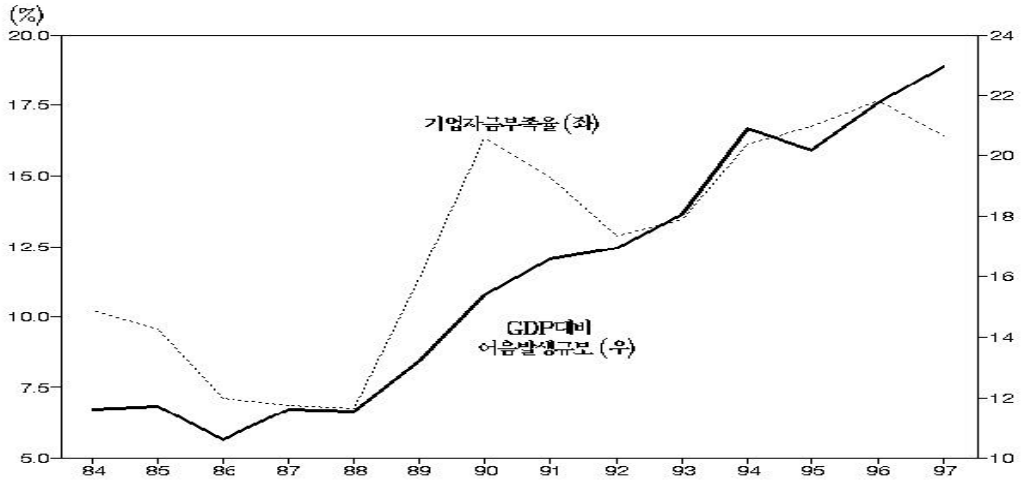
[圖 1] GDP 대비 固定投資와 어음發生規模 추이



[圖 2] GDP 대비 經常收支赤字와 어음發生規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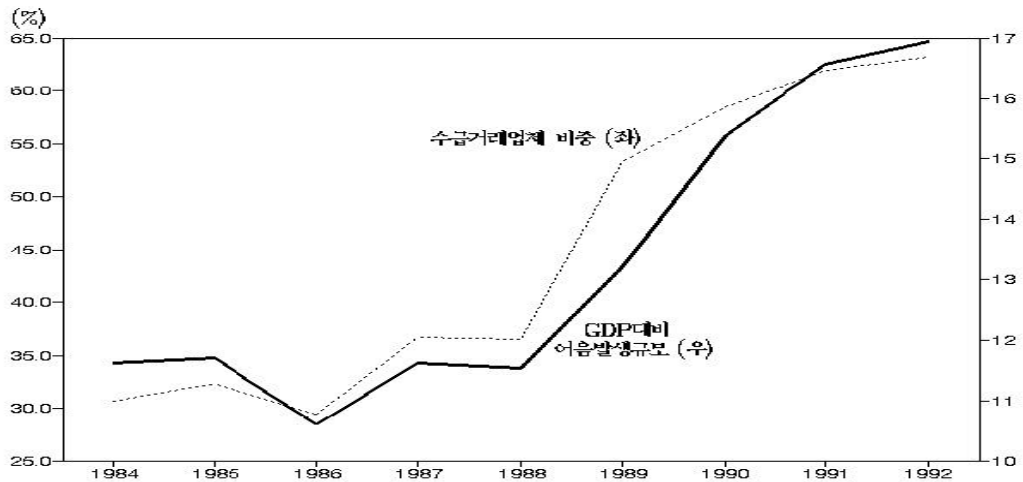
[圖 3] 企業資金不足率과 어음發生規模 추이



이외에도 趨勢的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賃金 급등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상대적 低賃金을 활용하기 위한 下都給去來가 대폭 擴大된 것도 어음발행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제조업 중소기업체수 중 受給去來業體 비중이 86년의 29%에서 92년에는 63%로 급증.
- 建設業의 경우에도 89년 이후 건설업 免許發給制限 완화조치로 인해 업체수가 88년 이후 약 7.8배 증가하는 가운데 都給建設을 위주로 하는 中小業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

圖 4] 中小製造業體중 受給去來業體 比重과 어음發生規模



나. 金融機關의 어음割引 現況

97년말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의 眞性어음割引 총잔액은 47兆원으로 96년 (53조원) 대비 11% 감소. (表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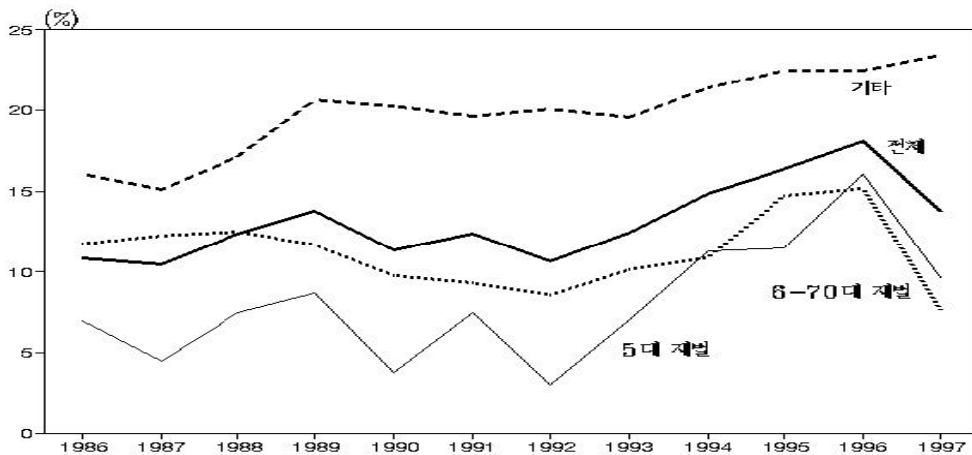
- 97년에 어음할인이 크게 감소한 것은 外換危機 발생을 전후하여 금융부실 및 기업의 부도위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급격히 위축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어음할인 부진으로 인하여 97년의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어음 발생규모)은 96년의 62.3%에서 크게 하락한 48.5%를 기록. (表 2 참조)

- 현재의 우리나라 어음의 현금화율은 일본 등 先進國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낮은 수준임.
- 외상매출금까지 포함한 총 외상賣出債權의 현금화율은 극히 부진한 외상매출금 현금화율로 인하여 97년 현재 2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外部監査對象 기업(자산규모 60억원 이상) 및 上場會社の 외상매출채권 현금화율은 97년중 각각 13.8% 및 10.3%를 기록. (圖 5, 圖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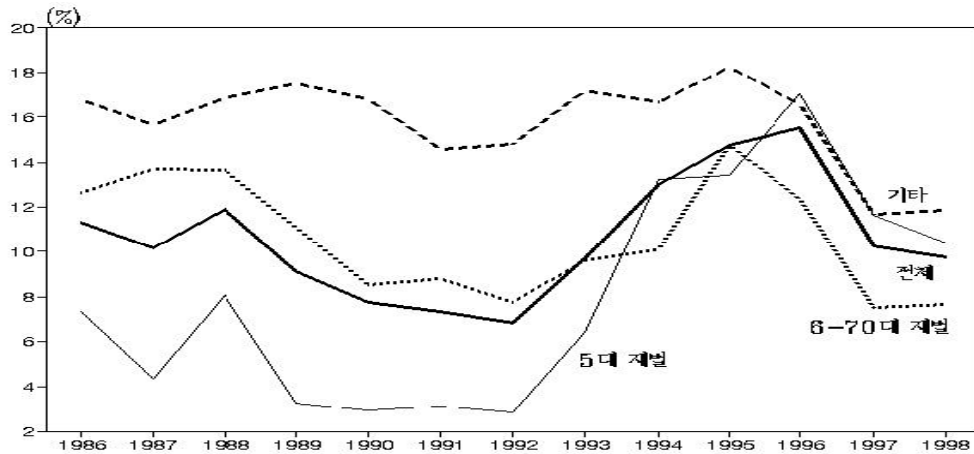
* 비재벌 독립기업의 현금화율이 재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견·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대한 韓銀 총액한도대출 등 政策金融 지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圖 5] 外部監査對象 기업의 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



資料: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圖 6] 上場會社の 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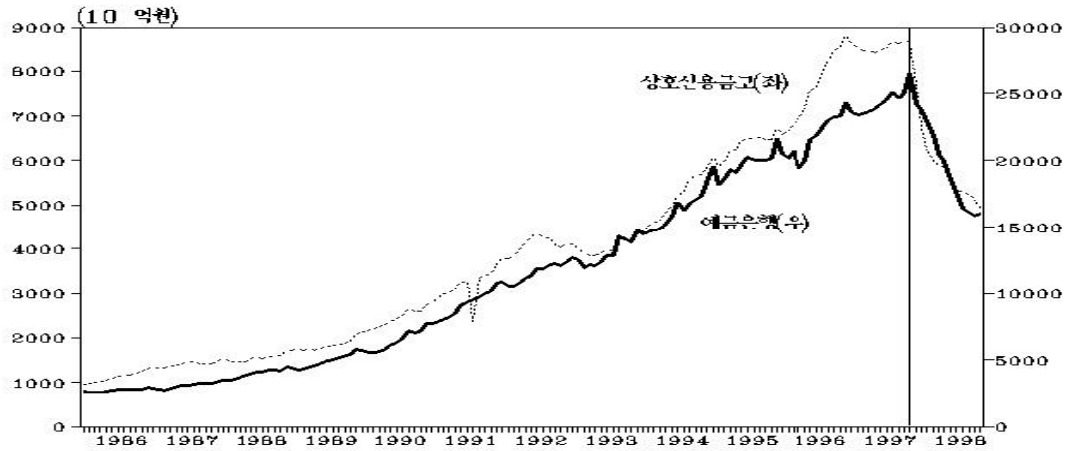


資料: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1998년 들어서는 景氣沈滯에 따른 실물거래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부도위험 증대에 따른 信用梗塞 심화로 금융기관의 어음할인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圖 7 참조)

- 금년 11월말 현재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진성어음割引 잔액은 약 21兆 원으로서 작년 11월말 35兆원에 비해 무려 40% 감소.
- 그러나 이러한 어음할인격감은 부도위험 증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위축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어음할인수요 부진에도 기인.
- * 실제로 上場會社の 경우 금년 6월말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 등 買入債務잔액이 36兆원으로서 작년말 41兆원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상반기중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음발행 자체도 위축되었음을 반영. (表 4 참조)
-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기관 어음할인규모 격감은 金融要因(신용경색)과 景氣要因(경기침체)이 복합되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

[圖 7] 銀行과 相互信用金庫의 月別 眞性어음割引 실적추이



資料: 한국은행, 상호신용금고연합회

<表 4> 上場會社の 외상買入債務 잔액

(단위 : 兆원)

| | 1 5대 재벌 | 6 70대 재벌 | 非財閥 | 전체 |
|-------------|---------|----------|------|------|
| 94년 | 11.0 | 7.6 | 3.9 | 22.6 |
| 95년 | 12.9 | 9.1 | 4.7 | 26.8 |
| 96년 | 16.0 | 10.6 | 5.2 | 31.9 |
| 97년 (A) | 18.8 | 15.1 | 6.8 | 40.7 |
| 98년 상반기 (B) | 16.2 | 13.9 | 5.7 | 35.8 |
| B - A | -2.6 | -1.2 | -1.1 | -4.9 |

資料: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4. 우리나라 어음制度的 構造的 問題點

가. 不健全한 商去來秩序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眞性어음 割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眞僞與否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어음할인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 세금계산서 첨부규정은 할인대상 어음이 단순한 유통어음이 아니라 實物去來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眞性어음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절차로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임.
- 그러나 稅源露出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무자료거래 관행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과 품목을 조작한 虛僞 稅金計算書 수수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 *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中小企業(數)의 47%가 僞裝된 稅金計算書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반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입증될 경우 租稅犯處罰法에 의거하여 刑事處罰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사법당국의 의지부족으로 거의 死文化된 상태임.

나. 信用去來體制的 未定着

어음부도에 대한 事後的인 制裁(ex-post punishment)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조장하는 동시에 어음거래의 安全性을 저해함으로써 건전한 어음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手票不渡의 경우 「不正手票團束法」 등에 의거한 刑事處罰이 가능하나, 어음부도의 경우에는 民事責任만 규정하고 있어 故意不渡에 대해서 조차 형사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일부 惡德企業主의 경우 불량어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이를 現金化한 후 고의적으로 不渡를 내고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債務不履行의 경제·사회적 責任을 인식하여 사기어음 발행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處罰함으로써 투명한 商去來秩序 및 信用社會를 유도하였음.

* 1830년에 美國의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및 「펜실베니아」 州의 법정기록에 의하면 不渡로 교도소에 收監된 기업인의 수가 일반 범죄자 수의 3~5배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기업갱생절차인 Chapter 11의 도입과 함께 형사처벌대신 信用制裁로 전환되었음. 이러한 전환의 배경으로는 대공황기간 중 경제사범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려워졌다는 점과 함께 신용사회가 정착되면서 信用制裁에 따른 불이익이 신용거래질서 유지에 충분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음.

또한 어음부도 사업자에 대한 事後制裁 措置의 일종인 은행과의 去來停止 處分(적색거래처 지정 포함)에 대한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한 관계로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실정임.

-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음부도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은행의 當座去來 再開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금액만 변제하면 赤色去來處에서 해제되어 銀行貸出去來가 가능.

- 이와 동시에 信用不良情報의 管理期間도 적색거래처 해제 이후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도금액 변제후 3년이 경과하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음.
- 따라서 어음부도에 따른 사후적인 經濟的 不利益(penalty)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신용거래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

기존 제도하에서는 1년에 3회까지 1차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최종부도(2차부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1차부도 발생사실이 공식적으로 公開되지 않고 있어 어음거래 安全性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그동안 金融決濟院은 최종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년간 4회 이상 어음결제 계좌에 예금부족(1차부도)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부도처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去來停止處分을 실시해 왔음.
- 우리나라의 不透明한 企業會計 관행하에서는 기업의 1차부도 발생여부에 대한 情報는 해당 기업의 경영 및 신용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임.
- 이러한 중요한 신용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어음거래의 安全度에 대한 不確實性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업무에 수반되는 情報費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어음부도에 대한 미약한 법적·경제적 事後制裁와 함께 어음부도와 관련한 債權回收가 쉽지 않아 오히려 불량어음의 流通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

- 부도어음 발행자의 名義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他人名義로 재산을 隱匿시킨 뒤 고의 부도를 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어음不渡 管理·處理 관련 우리나라의 制度 變遷>

1993년 8월 行政規制緩和 차원의 「중소기업 부도방지 및 정상화 촉진대책」에 따라, 거래정지처분 이후 부도어음을 정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처분을 解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거래정지처분 해제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어음발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지만 거래정지기간중에도 신용이 회복되면 당좌거래를 再開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救濟制度임.
- 1910년 어음교환소가 최초로 설립된 당시에는 거래정지를 받은 자가 현저히 信用을 回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거래정지처분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총회에서 출석은행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후 1959년 4월에는 해제신청의 요건을 “현저히 신용을 회복하였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특히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을 경과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64년 1월에는 이러한 기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解除要件을 일부 緩和.

거래정지처분 要件事由의 하나인 「年間 1차부도 발생회수」에 대한 규정도 1993년 7월의 行政規制緩和 조치에 따라 中小企業의 최종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종전의 年間 3회에서 4회로 완화.

- 1910년의 어음교환소 최초 설립시 年 3회로 규정된 것을 1959년 4월에는 2회로 강화하였으나,
- 1984년 1월에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및 어음제출시간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음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3회로 늘림.

다. 硬直的 金利體系로 인한 어음割引 制約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銀行의 중소기업 어음할인 금리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의 어음割引 誘因이 저해됨.

-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할인금리 차등폭이 작은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利差補塡를 지원하고 있는 韓銀의 總額 限度貸出制 운용에 기인.

* 현재 은행은 중소기업 어음할인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전체 어음할인 재원중 약 절반 정도를 低利의 韓銀 借入(金利 연 3%)으로 지원받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직적인 어음할인 금리체계로 인하여 어음할인업무의 收益性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은 收支補塡를 위하여 중소기업에게 꺾기 및 과도한 擔保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속.

* 현재 銀行은 어음할인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동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등 擔保確保에 치중하고 있으며, 信用에 의한 割引 조차도 각종 채권보전조치와 連帶保證을 요구함으로써 대체로 形式에 그치고 있음.

5. 어음制度的 改革方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擔保力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資金難을 완화하여 원활한 實物去來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주요 결제수단인 어음거래의 正常化가 핵심과제임.

-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 기업 연쇄부도위험 확산으로 인하여 기업간 어음거래와 함께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

어음의 實物去來 지원 기능 등 순기능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금결제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은 오히려 심각한 實物去來의 위축을 초래할 것임.

- 영리를 추구하는 私企業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실물거래 가격 왜곡을 초래하여 價格의 情報機能을 저하시킬 가능성.

* 현금결제를 강제할 경우 도급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결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納品單價 引下로 移轉하려는 誘因이 항상 존재.

- 구매자의 자금유용을 방지하고 어음발행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監視費用이 소요됨.

현행 어음제도의 問題點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 未定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어음제도의 改革은 다음과 같은 3대 基本課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제고

어음거래의 公信力 확보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割引 촉진

가.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提高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上的 惠澤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으로써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성실신고에 따른 稅金惠澤과 자료노출에 따른 利得(금융기관 접근 용이 등)을 더한 惠澤合計額이 脫稅誘惑額보다 크게 조정될 경우 同 제도는 어음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성실신고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성실신고자에 대해 부여된 稅制惠澤分이 기존의 불성실신고로 부과하지 못했던 稅金脫漏額과 같게 유지될 경우 재정의 추가적 稅收減少 없이도 地下經濟의 양성화가 가능.

- 성실신고제는 기존 탈세자에 대해 처벌 대신 세제상의 特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租稅衡平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신용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不可缺한 조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성실신고제는 자료노출에 따른 租稅抵抗을 해소하고 나아가 商去來秩序 투명화 및 金融發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성실신고제의 早期定着을 위해서는 조세전산망 확충을 통한 徵稅行政의 선진화, 申告企業의 부실회계처리 및 公認會計士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없는 處罰 등의 종합시책이 병행되어야 함.

- 無作爲로 추출된 신고기업들의 稅務調査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罰金을 과징하고 불법신고자에 대해서는 事業者登錄證을 취소.

- 특히 성실신고서 “추가적 租稅負擔이 없고 은행문턱이 낮아지는 등 資料露出의 利得이 크다” 라는 사실을 弘報·教育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 美國 등 선진국은 稅政의 基本方向을 “自發的이고 誠實한 납세의무 준수”에 두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자진신고(self assessment)를 장기간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 성공하였음.

* 日本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美軍政期에 Sharpe 教授에 의해 제안된 성실신고제(靑色申告制)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974-88년에는 한시적인 특별조치로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稅制上的 特典을 강화한 바 있음.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작성 및 유통 등 불건전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虛偽 稅金計算書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刑事處罰을 예외없이 엄격히 집행.

- 이와 함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의 識別 및 유통과정에 대한 監視가 가능하도록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과세자료 樣式을 簡素化.
- 진성어음 할인을 위해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國稅廳 通報를 義務化하고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세금계산서를 추적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나. 어음去來의 公信力 確保

(1) 어음不渡 관련 事後制裁 強化

일반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부도에 따른 신용질서 교란의 責任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事後的인 制裁措置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의 過渡期的 조치로서 적색거래처 지정기간(현행 2년)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현행 3년)을 延長하여 어음부도에 따른 경제적 不利益을 확대.

-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지나친 不利益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부도발생 回数 및 規模 등에 비례하여 기간연장을 差等適用하는 방안을 검토.

<先進國의 不渡事業者 事後管理 體系>

美國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인지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기업신용조사기관인 Dun & Bradstreet사(Moody사의 母會社)에서 同 정보를 영구히 관리.

- 채무불이행 사업자는 통상 7년동안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獨逸은 어음부도사업자는 어음법에 의거 5년동안 사업재개가 불가능.

日本은 어음부도시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전문기관인 TDB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영구히 관리.

赤色去來處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적색거래처 지정을 解除하는 것도 부도 발생 사업자가 自救努力을 통하여 현저히 信用을 回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채권은행의 同意하에 결정.

- 현재와 같이 단순히 부도대금의 상환여부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성실한 自救努力을 경주하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再起의 機會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현재 최종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처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年 4회 이상의 1차부도 기준을 年 2회(혹은 3회) 이상의 1차부도로 축소하여 어음부도에 대한 市場規律을 강화.

부도발생 사업자가 어음부도에 대한 제도적인 事後制裁를 피하여 他人名義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사례도 엄격히 管理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信用保證基金의 신용정보자료와 國稅廳의 휴·폐업 관련 정보 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2) 支給期日 約定手票制 導入

기업간 신용거래질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一定規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어음과 같이 支給日을 기재하여 결제할 수 있는 支給期日 約定手票 (post-dated check)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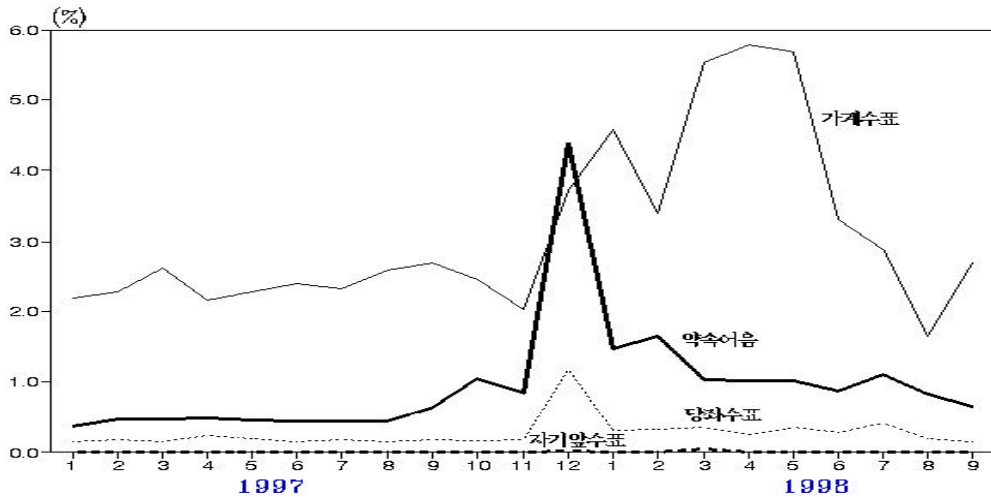
- 지급기일 약정수표는 지급결제 수단인 手票와 신용거래 수단인 어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급기일 약정수표를 一定規模 이상인 거래금액에 한정하여 발행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刑事處罰이 가능하므로 거래과정에서 현재의 手票에 해당하는 公信力을 확보할 수 있음.

* 수표부도에 대한 형사처벌로 當座手票의 不渡率은 어음부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家計手票 부도의 경우 장당 去來金額이 미미(최고한도 500만원)하여 實質的인 형사처벌이 어려움에 따라 부도율이 높게 나타남. 가계수표는 주로 영세사업자간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며 높은 부도율에 따른 낮은 공신력으로 去來規模 자체가 縮小되고 있는 추세.

- 캐나다와 동남아 국가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지급기일 약정수표제도를 수표제도의 일환으로 운영.

[圖 8] 支給 決濟手段別 不渡率 추이



지급기일 약정수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어음제도를 계속 維持하여 거래수단을 多樣化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급기일 약정수표는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추가적인 危險이 수반되므로 수표발행 사업자는 자신의 經營 및 信用狀態에 대한 자신감을 市場에서 評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일반어음 발행자는 市場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도위험이 높은 사업자로 평가받게 되지만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위험부담은 피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급기일 약정수표제가 정착되어 기업간 신용거래 수단이 다양화될 경우 사업자의 信用狀態에 대한 보다 正確한 評價 및 이에 따른 割引金利의 差等適用이 가능해질 수 있음.
- * 즉, 지급기일 약정수표의 경우 높은 公信用을 바탕으로 낮은 割引金利를 적용받는 반면, 일반어음의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할인금리가 적용될 것임. 따라서 특히 大企業과 건전 중소기업은 자체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지급기일 약정수표로 거래할 誘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割引 促進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 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할인유인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현 위기상황이 극복되는 시점에 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수단으로 운용되는 韓銀 總額限度貸出制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어음할인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財政에서 전담.
 - 금리자유화는 信用度에 따른 금리차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계층의 은행권 接近이 용이해 짐.
- * 아직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高金利의 私債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은행의 어음할인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平均金融費用은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으로 營利를 추구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貸出危險이 높은 中小企業에 대하여 低金利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은 결코 실효성이 없으며 外形과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큰 中堅企業에게만 자금지원이 集中되는 부작용 초래.
- 日本의 은행들이 70년대 중반 이후 대출위험이 높은 中小企業金融에 적극 진출하게 된 것은 大企業의 「脫銀行化」 외에도 金利自由化로 인해 부도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收益性이 확보되었던 사실을 인식할 필요.
 - * 현재 일본은 어음할인금리를 「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10% 내외의 差等を 두고 운용하고 있음.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흑자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지원에 대한 信用保證基金의 보증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확충.

- 특히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연쇄부도 및 이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信用梗塞 해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음할인에 대한 보증기금 재원 확충이 효과적임.
 - * 어음할인에 신용보증이 지원될 경우 금융기관의 BIS 危險加重値가 1/10로 축소되므로 어음할인에 따른 BIS비율 하락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출연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優先順位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신용보증부문에 集中 配定.

이러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民間保險會社에 의한 어음保險制度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경색을 해소.

- 보험업무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保險料率을 보험가입자 및 어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差等適用하고, 信用保證基金은 민간부문의 어음보험에 대한 再保險 지원.
- 기업간 거래의 80%가 어음에 의해 결제되는 프랑스는 어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어음割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의 외상賣出債權 保險制度 >

導入 背景: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취약한 기업재무구조 등으로 인하여 어음결제비중이 높아 불황기에는 자연히 連鎖倒産이 빈번히 발생.

- 특히 1930년대 대규모 연쇄도산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오늘날 외상매출채권 保險制度의 윤곽이 결정됨.

制度 概要:

- 물품구매자의 不渡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 공급자의 損失危險에 대한 보험을 제공.
- 구매자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악성부채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保險料率을 부보가능한 賣出額(예: 月別 외상판매실적)에 대해 적용.
- 부도발생시 보험회사와 물품구매자간의 직접 協商 또는 訴訟 등 가능한 모든 法的 手段에 의하여 물품구매자의 채권을 회수.
- 保險金은 보험대상금액에서 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보율을 적용하여 지급 (부보율: 60 75%).

고의적인 어음부도 유인을 억제하고 어음부도에 따른 善意의 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활한 債權回收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업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의 子會社 형태로 債權回收 專門會社를 육성하여 신용정보와 채권회수 업무를 연계하여 채권관리 부터 채권회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유럽국가들 중에서 네덜란드는 債權未回收率과 債權管理 費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네덜란드가 외부의 채권회수기관을 포함하여 채권회수에 대한 각종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데 기인.

- 최근에 도입된 어음보험제도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債權回收가 전제되어야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어음보험회사의 채권회수율이 85% 수준에 이르고 있음. SFAC사의 경우 높은 채권회수율을 바탕으로 94년중 약 2억 프랑(약 3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음.

<表 5> 유럽국가의 債權未回收率과 債權管理費用

| | 네덜란드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태리 |
|----------------------|------|------|------|------|------|
| 채권미회수율 ¹⁾ | 0.47 | 1.33 | 0.65 | 0.53 | 2.30 |
| 채권관리비용 ¹⁾ | 2.32 | 3.65 | 3.65 | 3.50 | 6.94 |

註 : 매출액대비.
資料: Les Echos Finances, 1995.

기업신용정보 交換시스템 구축 및 信用評價會社의 육성 등을 통하여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을 촉진.

○ 세금체납 및 휴·폐업정보(국세청), 개인파산선고 등 경제판결(법원), 공공요금 체납정보(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統合管理**할 수 있는 종합적인 **信用情報網** 확충.

○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경쟁체제 구축.

財閥의 진성어음 등 **優良**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資産擔保附 證券化**(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제도를 도입하고 **同** 증권을 국내 및 해외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도모.

○ 최근 **Moody's社**가 원화국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부여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신용평가 및 금융기관의 **支給保證**이 수반될 경우 외국투자자에 대한 어음 담보부증권 **賣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진성어음을 견질담보로 하는 **表紙**어음에 대한 유통시장 활성화 및 발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재원을 확충.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相互信用金庫**,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中央機構**의 **銀行業** 진입을 허용하여 **表紙**어음매출업무를 확충·허용.

* **地域金融機關**은 고객에 밀착하여 **反復的** 거래관계나 관련기업들로부터의 신용정보취득을 통해 중소기업금융에 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효과적으로 **緩和**할 수 있음.

제1·2금융권이 발행한 **優良 表紙**어음을 중앙은행의 **公開市場操作** 대상증권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通貨 供給體制**를 구축하는 형태의 **間接規制方式**의 통화정책 여건 조성.

○ 일본의 경우 1972년 **表紙**어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된 이후 **同** 어음이 국공채와 함께 중요한 유동성조절대상 증권으로 정착됨.